

1 건설공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2 건설공사란 이런 것!

3 불법 하도급 영원히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광기준에 등록

- 종합건설 : 시·도
- 전문건설 : 시·군·구

※ 예외) 1건의 공사가 5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
또는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도급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하도급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물품납품으로 위장한 하도급은 끝번

건설공사를 물품납품 등의 형태로
변경하여 하도급 하는 것은 저가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위한 편법입니다.



부실공사와 대금체불의 원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8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처벌규정

부실공사와 대금체불의 원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불법유형	내 용	처 벌
디모계(제)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영업정지(4~8개월) 또는 과징금,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하도급	공사내용에 상응하지 않은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무면허 시공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 하고 건설공사를 시공 하고 건설공사를 시공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법 하도급을 빙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청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대금을 체불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